

사회체육프로그램운영규정

제 정 1999. 9.
개 정 2012. 7.
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사회체육프로그램(이하 “본 프로그램”이라 한다)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교육장소) 본 프로그램의 교육장소는 본 대학 사회체육센터에 설치한다.

제3조 (주관부서) 본 프로그램의 제반 운영은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 다만, 본 대학 평생교육원과 관련된 강좌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원과 협의하여 사무를 조정한다.

제4조 (연수과정) 본 프로그램에는 사회체육의 보급과 지역민들의 정신 및 신체의 건강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교양교육과정(정신건강 이론, 현대인의 질병과 스트레스, 부부행복론, 노래교실, 생활의학과 건강관리, 유아체육,) 체육실기과정(기초체력 단계별 트레이닝, 헬스, 에어로빅, 댄스 스포츠, 탁구, 배드민턴 교실 및 스포츠 마사지요법, 단전호흡, 스포츠테이핑요법) 및 노인체육과정 등을 둔다 다만, 직장인 강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5조 (정원) 본 프로그램의 수강정원은 매월 120명으로 한다.

제6조 (수업)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.

제 2장 운영위원회

제7조 (운영위원회 구성) ①본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체육프로그램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본 대학 교원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, 본 프로그램 운영의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대외직명으로는 사회체육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고 한다)이라 한다.

제8조 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9조 (심의사항) 위원회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
2.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4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제 3장 수강등록

- 제10조 (등록시기) 본 프로그램의 수강등록시기는 매월말 1주일로부터 다음달 초 1주일 이내로 한다.
- 제11조 (수강자격) 본 프로그램의 수강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(고교졸업자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수과정의 성격에 따라 경력, 학력 등을 제한 할 수 있다.
- 제12조 (수강원서의 제출) 본 프로그램에 수강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 (선발절차) 본 프로그램의 수강자 선발은 각 모집단위별로 원서 접수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고사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.

제 4장 수업연한, 교과과정, 학점, 성적 및 수료

- 제14조 (수업연한) 본 프로그램의 수업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5조 (교과과정) 각 연수과정의 교과과정은 매월별로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6조 (이수학점) 각 연수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17조 (학업성적)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. 다만,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8조 (수료증 수여) 각 연수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(별지 제1호 서식)을 수여한다.
- 제19조 (제증명 발급) ①각 연수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
 ②모든 강좌내의 각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과목의 이수증명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
 ③모든 강좌에 수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교부할 수 있다.

제 5장 수강생지도, 장학금 및 납입금

- 제20조 (수강생 지도) 본 프로그램의 수강생은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제21조 (포상) 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만한 수강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22조 (징계) ①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.
 ②징계의 종류는 근신, 정학, 제적으로 구분한다.
- 제23조 (장학금) 본 프로그램의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본 대학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4조 (납입금) ①수강생은 매월 등록시에 수강료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②이미 납입한 금액은 과오 납입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장 공개강좌

제25조 (공개강좌) ①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